불자 세상보기

공공미술 보호, 시민의식 발로

홍광표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공공미술작품, 1995년 이후 증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설치 의무
도시 이미지 전달 수단 자리매김

관리 주체 불분명 훼손 책임 모호
공공재산이지만 훼손·방치 늘어나

공공시설 주위로 정원 조성 해법
심리적으로 접근 차단 효과 있어

'공공미술작품'이라 함은 공원·도로·녹지대 등의 공공용지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을 말한다. 이 공공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1972년부터 설치를 권장해오다가 199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미술작품이 가지는 가치는 도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적·예술적 대상이라는데 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해온 우리나라이지만 아직도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공미술작품은 우리가 문화적 삶을 살고, 예술적 감수성을 얻는데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또한 도시의 공공공간에 세워진 미술작품은 도시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건축물에 세워진 미술작품은 건축주의 건축의도를 읽을 수 있는 소통수단이기도 하여 그 도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남겨주기도 한다.

그런데 공공미술작품은 그것이 가지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설치에 대한 문제와 관리에 대한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한 문제점들 중에서도 공공미술작품의 관리에 대한 것은 지자체나 건축주가 의도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해결이 쉽지 않았다.

공공미술작품의 관리문제는 법적, 제도적으로 볼 때 관리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철거나 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단한다. 즉,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위해가 있어도 원상회복이나 처벌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공공미술작품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직까지 시민들의 의식이 공공미술작품이 시민들이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공동의 재산이며, 공공미술작품이 우리들을 정서적으로 순화시키고, 예술적 감성을 키우는 요소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또한, 내 것이 아니니 쉽게 대하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그릇된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인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니 당장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단기적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한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미술작품으로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접근성을 완전히 제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잘못할 경우 미술품의 진정성을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경계요소를 도입하여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법을 권해본다.

이러한 경계요소 가운데에서 공공미술품 주변으로 물이나 초화류 등을 소재로 하는 정원을 조성하는 방법은 미술품에 대한 훼손을 방어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미술작품 주변에 정원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은 정원이 미술작품과 경쟁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며, 단순히 미술작품을 보호하는 수단으로만 기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미술작품 주변에 정원을 만드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미술작품 주변에 정원을 조성하려면 정원조성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게 되어 지자체나 건축주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원의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미술작품의 관리비용이라고 생각하거나 정원자체가 공공미술작품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낸다면 정원 조성이 그다지 큰 부담은 아닐 것이다.



기자칼럼
윤호섭 취재부 기자

중앙종회 본분은 입법활동

한 해를 마감하는 제209회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가 막을 내렸다. 11월 1일 개원해 8일까지 이어진 중앙종회는 중앙종무기관 종정감사와 원로회의 의원 추천, 종무보고 및 종책질의, 각 위원회 인사안 처리 등 숨 가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중앙종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은 과거 어느 때보다 미진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 회기서 이월된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과 연동법인 사면법 제정안, 원로회의 구성요건인 '교구별 재적승'에서 '재적승'을 삭제하는 원로회의법 개정안을 비롯해 원로회의 요청에 따라 발의한 원로의장단 임기단축 종헌개정안이 입법활동 전부였다. 결국 중앙종회의원들이 치열한 고민과 논의 끝에 새롭게 내놓은 제·개정안은 없는 셈이었다. 게다가 앞서 열거한 모든 안마저 이월시켰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6월과 9월 임시회가 모두 열리지 않았다. 총무원장선거 직전인 9월 임시회는 차치하더라도 6월 임시회가 열리지 않은 건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사실 6월과 9월 임시회는 말 그대로 '임시'이기 때문에 열지 않는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7개월간 별다른 활동 없이 시간만 흘려보냈다면 얘기가 다르다.

종헌종법특위는 이월된 종헌개정안에 대해 그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즉 종정 진제스님의 교시와 원로의원들의 당부에 따라 발의한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은 부칙으로 1회에 한해 종헌을 제한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지난 회기서 이월됐음에도 현재까지 논의가 없었던 것이다. 현행 간선제의 폐단을 줄이고, 종도 의견을 반영해 여법하게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총무원장선출제도개선특위는 5월에 간사 선출과 활동계획 논의 후 개점휴업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특위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그럼에도 몇몇 종회의원들은 총무원장 선거로 인해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변명을 내놨다.

시곗바늘을 잠시만 앞으로 돌려보자. 불과 두 달 전,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임시회를 열어달라던 일부 종회의원들의 임시회 소집요구서는 무엇 때문에 제출됐던 것일까.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미흡한 선거법을 지적하며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던 종회의원들은 어디로 다 사라졌을까. 제35대 총무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선거국면이 8월부터였던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3~4개월 입법활동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선거와 입법활동은 별개인 사안이라 애당초 변명거리도 되지 않지만 말이다.

내년이라고 활발한 입법활동을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제16대 중앙종회 임기는 내년까지인 데다 정기회는 더 이상 없다. 3월 임시회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하반기에 접어들면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로 인해 제대로 된 입법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15대 중앙종회는 2014년 6월 임시회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한 바 있다.

'주인은 되는 방법을 찾고, 머슴은 안 되는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있다. 종단의 주인은 종도이고, 종도는 곧 사부대중이다. 그 중에서도 승가는 인천(人天)의 사표(師表)이자 불교를 이끄는 구심점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구심점이 머슴살이해서야 되겠는가.

社說

연등회, 세계 유산 등재를 바라며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과 그 환희로움을 연등 행렬을 통해 보여주는 축제인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문화재청이 11월 7일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회의서 내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 등재 신청 종목으로 연등회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연등회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그 연원이 올라간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경문왕 6년(866)과 진성여왕 4년(890)에 '황룡사에 가서 연등을 보았다(看燈)'는 기록이 있다.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에는 팔관회와 더불어 연등회를 봉행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고려사〉에 따르면 의종 20년(1166)에 백선연이 부처님오신날에 연등회를 시행했고, 고종 32년(1245)에도 최이가 연등회를 열어 밤새도록 기악과 연희를 벌였다. 이것이 지금의 연등회로 계승됐다.

현대적 연등회는 1975년 부처님오신날이 국가 공휴일로 제정되면서 현대 연등회 행사는 본격화 됐으며, 1996년부터는 연등행렬과 더불어 불교문화마당, 어울림마당, 회향한마당 등 행사를 추가해 국민적인 문화축제로 발전했다.

연등회는 지금도 살아 숨쉬는 축제이며, 전통을 바탕으로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 불교계는 연등회의 유산 등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형유산 대표 목록의 경우 보존 공동체의 동의와 등재 요건만 잘 갖춰 신청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등재가 된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속담도 있듯이 착실한 준비는 몇 번 강조해도 아쉽지 않다. 2020년에는 연등회의 유산 등재 소식을 지면을 통해 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

군종병 홍보에 적극 나서자

조계종 군포교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병무청이 그동안 병행해왔던 군종병의 특기병 선발과 자대 선발 방식을 변경, 일괄 특기병 선발로 바꾼 것이다. 불교군종병은 군법사를 대신해 법당 관리부터 집전까지 맡는 일종의 포교사다. 하지만 현실은 안타까울 정도를 넘어 심각함이 느껴진다.

군종교구에 따르면 현재 정원 대비 지원자가 적어 미달이 되거나 경쟁률이 저조해 우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5명 정원에 2:1 수준이었던 경쟁률은 올해 미달됐다. 올해 들어 각 분기별 선발정원이 10명으로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기독교 군종병의 평균경쟁률이 2.5:1인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국방부가 2018년 필요한 군종병을 60명으로 산정, 분기당 15명을 선발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로 다가온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종병의 지원율이 적은 것은 그동안 군종병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다. 그동안 부족한대로 자대에서 군법사들이 홍보를 해왔지만 이제는 다른 상황이다.

각 사찰의 불교학생회 활동저하로 인해 입대 적령기인 20대 초반 청년불자는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불교계의 관심 부족까지 겹치고 있는 것이다.

군종병은 군 복무를 하면서도 부처님과의 불연을 이어갈 수 있는 군 보직이다. 부처님과 함께하는 호국호법의 길이 펼쳐져 있다. 군포교를 담당하는 군종교구 외에 많은 불자들이 군종병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권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군종병은 또 다른 포교사다. 보다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겸 편집인 : 박종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